

표준약관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【양도담보계약서】

현 행	개 정(안)
<p>제8조 (담보목적물의 처분) ① 담보 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,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. “채무자 등”은 채무자, 설정자,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.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.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. 그 밖에 <u>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</u> 경우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 (담보목적물의 처분) ①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--- 3. ----- ----- ----- 4. ----- 제1호 내지 제3호 에 준하는 -----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